

고용유지지원금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기간 위반을 이유로 기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2. 1. 3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



1. 건 명 :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-공시송달자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2. 1. 3. ~ 2022. 1. 17.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보령고용센터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(F.0508-8230-0714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보령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김민우(전화 041-930-625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고용유지지원금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2. 1. 3. ~ 2022. 1. 17.)

연번	대상자명	사업자 등록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1	(주)태양 중공업 (김○자)	622-○○ -23078	고용유지지원금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회수처분	2,849,010원	2,849,010원	감원방지기간 위반	폐문부재 연락불가	(1차)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북로 *** (1차)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북로 ***